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및 재위촉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해촉 규정을 보완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5조의2, 제10조)
 - 공무원 위원 1/3 초과금지, 연임 1회에 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회피사유발생시 미회피 위원과 비밀누설, 정보의 사적이용시에 해촉 사유 신설
- 회계관직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 종전 충청북도경리관 ⇒ 개정 충청북도재무관
- 인용법률 제명 변경 (안 제2조제2항제4호)

-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인용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이를 반영하는 것과, 투명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